조기재취업수당 안내 (자영업)

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

- 1. 대기기간(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)이 지난 후, 12개월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만 해당
 - 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(12개월분)
 - ② 자유직업종사자(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학원강사, 다단계·방문판매원, 채권추심원, 개인택시, 개별용달, 퀵배송, 컴퓨터프로그래머, 샵매니저, 자동차딜러, 텔레마케터 등 프리랜서, 즉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포함)로 등록・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사업 영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(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비영리사업(어린이집 등)의 경우에도 적용)
- 2. 사업개시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/2이상 남아 있어야 함.
 - 사례) 「90일의 경우 45일 이상」,「120일의 경우 60일 이상」,「150일의 경우 75일 이상」,「180일의 경우 90일 이상」, 「210일의 경우 105일 이상」,「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」,「270일의 경우 135일 이상」 남아 있어야 함에 유의
- 3.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사전에
 - 1)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.
 - 2)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업인정을 받았을 것(전산확인)
- 4.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(사업개시일 기준)
- 5.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(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)가 아닐 것
 - ※ 사업 영위 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신고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.(상이 시 부지급)
- ※ 자영업 영위 중 사업의 단절(휴업, 다른 사업장 취업 등)이 있거나 타인 대리로 영위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됨
- ※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실제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없으면 비해당
- ※ 위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,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- 2. 제출서류 [인천서부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 \rightarrow 정보마당 \rightarrow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]
 -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 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③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(국세청 발급)(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해당)
 - ④ 세금계산서, 매출 또는 매입전표 등 사업 영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
 - ⑤ 부동산(사무실)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 - 자유소득자의 경우: 프리랜서 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수당 입금 내역(12개월분) 등
 - 개인택시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, 차량등록증, 카드사 월별 매출기록 등(12개월분)
 - 개인용달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,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12개월)
 - ※ 사업영위 증빙서류는 연속적으로 12개월분이 제출되어야 함.
- 3. 청구방법 [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센터에 본인이 직접 청구]

방문(대리인 가능), 등기우편, 인터넷(<u>www.ei.go.kr</u> - 첨부서류 스캔하여 업로드), 팩스 접수 가능

- □ **주소**: (우 22865)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스플러스빌딩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실업급여팀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(문의: 032-540-2045 / <mark>팩스: 0508-8230-0136</mark>)
- 4. 지급액: 구직급여일액 imes 잔여급여일수(사업개시일 $^{\sim}$ 수급기간만료일) imes 1/2
- 5. 기타 유의사항
 - ①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사업이 변경된 경우(폐업ㆍ휴업 등)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
 - ② 처리기한: 서류 접수일로부터 주말, 공휴일 제외 14일

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

	/	0	L	ᄍ	١
_ (ı	\sim		=	٠,

접수번호			접수일기	접수일자				처리기간: 14일			
	<u> 1성명</u>			(②주민등록번호						
청구인 (수급자격자)	③주4	<u> </u>									
				(전화번	호:		휴대전화변	<u>년호</u> :)	
	4)사임			(5대표지	·의 성명					
	⑥소재지			·	 (전화반				<u></u> 년호:)		
취직 사업장	⑦취직일			(8취직 ·						
(사업에 고용된 경우)	9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시업장								• 양수한 시업주에게 재취직		
	(실업급여 신청 직전 다녔던 직			! 식상명)	시업장과 재취 [] 시법을 반				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		
					직한 사업장 [] ^{압명 • 문 [} 사업주의 관계 [] 해당 없음				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}		
	11)사임	<mark>성장명</mark>				12 [대표자의 성당	년 S			
자영업 사업징 (창업 등의 경우)	<u>13 소</u> 지	(3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				
	14사일	<mark>ქ시작일</mark>		<u>(</u>	ⓑ사업지	·등록번호					
	16업 경	5									
<u></u> ①지급계좌						/ all = 7 =					
(예금주:)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6조제1항·제2항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											
합니다.											
				청구	10			년	울 <mark>(人</mark>	<mark>네명 또는 인)</mark>	
중부지방	고용노	동청 인천	[북부지	- '	하				<u>(</u> -	10 ± C C)	
	1 근	·로계약서 또	는 재직종	즉명서 등 ⁻	고용기가	을 증명한 수	: 있는 서류(시	나업에 고	용되		
청구인 제출서류	1.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업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							
	※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수수료										
	2. 사업설명서,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없음 증명하는 서류(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							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사업자등록증(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							
				행정정도	보 공동이	용 동의서					
하여 위의 '담당	공무원	확인 사항'을	확인하는	것에 동의합	합니다.		조제1항에 따른 하나다	를 행정정.	보의 공	공동이용을 통	
※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
※ 아래 란은	적지 아	니합니다.									
처리		취업 수당 결정사항	산출명/ 지급액	તી 							
	미지	급 사유									
결재	담당		팀장		과장		청장 (지청장)		결.	재 연월일	

공지사항

- 1.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2.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 ~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- 2. ④ ~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.
- 3. ⑪ ~ ⑯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(장)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.
- 4. ⑦란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.
- 5. ⑧란은 취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, 서면 등으로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.
- 6. ⑨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⑩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취직한 사업장과 ⑨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.
- 7. ⑭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"개업연월일"을 적습니다.
 - ※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,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.
- 8.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과세 증명자료(세금계산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전표 등), 급여명세 서(보험설계사, 프리랜서 등의 경우)

